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2년 11월 10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11. 25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유광순)

가. 제안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 (안 제3조, 제4조)
- 지도 및 감독 (안 제5조)
- 지원 중단 (안 제6조)
- 표창 및 준용 (안 제7조,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<sup>1)</sup>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 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이고 9개의 본칙 조문 및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절차,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, 보조금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등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업무 수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규정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---

1) 의용소방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,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11월

발의자: 이성수, 우경란, 최봉희  
이규선, 차인영 의원  
(5인)

## 1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를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정립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의용소방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지원 중단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
### 3. 제정안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2. 11. 14. ~ 11. 18.)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지원범위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**제4조(지원절차 등)**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

청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 교부 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
4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도 및 감독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 중단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,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
3.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5.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**제7조(표창)**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